

제 16 장 경쟁 관련 사안

제 16.1 조

경쟁법과 반경쟁적 영업행위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하거나 채택한다.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그러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당국의 집행 정책은 당사국의 인이 아닌 인을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인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대우하는 것이며, 각 당사국의 당국은 이 정책을 유지하고자 한다.
3. 각 당사국은 행위가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법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제재 또는 구제를 명하여야 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특히,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에게 그 당사국의 법원에서 그 제재 또는 구제의 재심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당국에게 그 집행조치의 대상자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 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합의가 사법적 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행위가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법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제재 또는 구제를 명하여야 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 대한 절차규칙을 공표한다. 이러한 규칙은 그러한 절차에서 증거를 도입하는 절차를 포함하며, 이는 그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7.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 당국 간의 협력 및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상호지원·통보·협의 및 정보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집행정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각 당사국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협력한다.

제 16.2 조 지정 독점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지정하는 모든 민간 소유 독점과 자국이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한 모든 정부 독점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 가. 그러한 독점이 당사국이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입 또는 수출 면허의 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협정 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 나.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¹⁾에 있어 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성, 운송과 그 밖의 구매 또는 판매 조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 다만, 나호 또는 라호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지정 조건²⁾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³⁾.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6.2조의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는 지정 독점 공급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지정 독점 구매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지칭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의 지정 조건을 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나호는 지정 독점이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특정 요금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수립된 그

- 다.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적용 대상투자,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할 것, 그리고
- 라.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공동 소유의 그 밖의 기업과의 거래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의 비독점 시장에서 적용대상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데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거나 지정 독점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조는 정부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6.3 조

공기업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공기업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 가. 그러한 공기업이 당사국이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용, 면허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할 것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밖의 조건에 따라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요금 또는 그 밖의 조건은 다후 또는 라호와 불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4 조

가격차별

제16.2조 및 제16.3조는 가격차별이 수요 및 공급 조건의 고려와 같이 통상적인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독점 또는 공기업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 또는 동일한 시장 안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6.5 조

투명성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 집행 정책에 있어 투명성의 가치를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다음에 관한 공공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가. 자국의 경쟁법 집행 활동

나. 자국의 공기업과 모든 정부 수준에서 정부 또는 민간 소유의 지정 독점. 다만, 그 요청은 관련 실체를 표시하고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와 관련 시장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실체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관행에 관여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 자국의 경쟁법에 대한 예외 및 면제. 다만, 그 요청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시장을 명시하여야 하며, 예외 또는 면제가 양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모든 최종적인 행정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관련 사실 조사결과와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논거 및 법률적 분석을 기술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 결정과 그 결정을 이행하는 모든 명령이 공표되거나 또는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대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더욱 보장한다. 당사국이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 결

정 또는 명령의 공개본은 영업비밀정보 또는 자국 법에 의하여 대중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그 밖의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6.6 조

국경간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자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자국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상호 관심 있는 적절한 사안에서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한편으로는 미합중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가. 소비자 보호 정책에 관한 협의와 자국의 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운영
과 관련된 정보 교환

나. 소비자에 대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을 발견하고 금지하
기 위한 협력 강화

다. 중대한 국경간 차원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에 대한 협의, 그리고

라. 국경간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
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2003)의 이행 지지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의 상대기관의 요청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2항에 언급된 기관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어떠한 기관도 모든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국의 중요 이해관계에 합치되
게, 자국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다른 한 쪽 당사국과의 효과적인 협력
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장애를 축소하기 위하여 자국 국
내 법률 체제의 수정을 검토한다.

제 16.7 조 협 의

1. 양 당사국간의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그 당사국은, 관련되는 경우, 자국의 요청에 그 사안이 양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3. 협의의 대상인 사안에 대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비밀이 아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16.8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제16.1조 ·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16.9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소비자 보호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4장제3절, 제9장 및 제10장과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정, 그리고
- 나. 미합중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상 의미에서의 “불공정하

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 및 규정을 말한다.

위임은 독점 또는 공기업에 정부권한을 이전하거나 독점 또는 공기업에 의한 정부권한의 행사를 승인하는 입법적 부여 및 정부 명령, 지시,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지정하다라 함은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인지에 관계없이, 독점을 설립 · 지정 또는 승인하거나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독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독점이라 함은 당사국의 중앙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되는 독점을 말한다⁴⁾.

상업적 고려에 따라라 함은 관련 영업 또는 산업에서 민간소유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 관행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라 함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지리적 및 상업적 시장을 말한다.

독점이라 함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컨소시움 또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실체를 말한다. 그러나, 배타적인 지적 재산권을 부여받은 실체는 그러한 부여만을 이유로 이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비차별적 대우라 함은 이 협정의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말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